

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의 변화와 특징 분석

An Analysis of Changes and Features in the Revised North Korean Library Act

최 재 황 (Jae-Hwang Choi)*

양 세 라 (Sarah Yang)**

< 목 차 >

I. 서론	IV. 북한 신·구 도서관법 비교 분석
II. 선행 연구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 방법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1999년 개정(1998년 제정)된 북한도서관법과 2012년 재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북한도서관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2012년에 재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이 이전 1999년 북한도서관법과 비교하여 수정, 삭제, 신설된 조문들은 무엇인지를 신·구조문 대비표 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1999년 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은 총 5장 45조로 구성된 반면, 2012년 재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은 제2장의 내용이 신설되어, 총 6장 58조로 개편되었다. 주요 변화와 특징은 정보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도서관과 전자출판물 관련 조문들이 신설, 수정되었고, 도서관 직원의 양성과 관련된 조문들이 신설되었다. 결론과 제언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원격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의 상호교류,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제 구축, 북한도서관 관련 전문 연구인력 양성 등 향후 남북한 도서관 간 교류협력에 있어서 상호 논의 가능한 주제와 분야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북한, 북한도서관, 북한도서관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orth Korean Library Act both in 1999 and in 2012. In this study, the North Korean Library Act revised in 2012 compared to the previous North Korean Library Act in 1999, and the newly revised, deleted, and newly established items were analyzed by old/new phrase contrast method. While the North Korean Library Act revised in 1999 consisted of a total of 5 chapters and 45 articles, the North Korean Library Act revised in 2012 was reorganized into a total of 6 chapters and 58 articles. The main changes and features are the establishment and modification of provisions related to electronic libraries and electronic publication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information service environment, and new provisions related to training of library staff. Based on the analyzed results, the topics and fields that can be discussed in the future, such as mutual exchange of various learning contents for remote education,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service cooperation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libraries, and training specialists on North Korean libraries.

KEYWORDS: North Korea, North Korean Libraries, North Korean Library Act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hoi@knu.ac.kr / ISNI 0000 0004 6002 3415) (제1저자)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연구원 (sryang@keris.or.kr / ISNI 0000 0005 0718 1825)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2년 5월 25일 • 최초심사: 2022년 5월 29일 • 게재확정: 2022년 6월 10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2), 117-136, 2022. <http://dx.doi.org/10.16981/kliss.53.2.202206.117>

※ Copyright © 202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북한에는 도서관법 제정 이전에 이미 도서관법을 대신한 문헌법이 있었다. 이 법은 1995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채택(제정)되었고, 공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헌법」이다. 문헌법은 “문헌의 편찬과 보존관리를 잘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이용)하여 민족의 력사(역사)와 찬란한 문화, 새 사회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업적을 빛내이는데 이바지”(제1조)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문헌법은 제1장(문헌법의 기본), 제2장(문헌편찬), 제3장(문헌보존관리), 제4장(문헌리용), 제5장(문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총 3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된 1995년 이후 개정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의 도서관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으로 1998년 1월 21일 최초 채택되었고, 공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이다. 이 도서관법이 채택되고 나서 1년 후인 1999년 1월 14일 도서관법이 수정(개정)되었고, 이후 2012년 12월 3일 수정보충(재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도서관법의 목적은 “도서관의 조직운영, 출판물의 수집, 장서의 보존관리, 도서관 봉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 주는데 이바지”(제1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서관법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제1조)하기 위한 목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2012년 북한도서관법 제2조에서는 도서관을 “출판물을 갖추어놓고 사람들이 공동으로 리용[이용]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사회 교육기관”으로, 제3조에서는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보급자, 사회적학습의 조직자”로, 그리고 제9조에서는 “인민들의 사상의식 수준과 과학문화 기술수준을 높여주는 인민학습의 중요거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 도서관의 목적이 사회적학습의 거점 역할은 물론 과학기술의 지식보급과 전민(全民) 과학기술의 인재화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전민 과학기술의 인재화는 전체 인민을 높은 과학기술 지식과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인재로 만드는 사업이다(리숙영, 2016c, 14; 안진송, 2017, 12;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7(3), 15). 이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 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김종선, 이춘근, 2017, 4).

전체 인민을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인재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키우는 사업은 전문교육기관들과 함께 사회 교육기관들을 통해 실현된다. 북한의 도서관법 제2조에서 언급된 사회교육의 거점으로서 북한의 도서관들은 전민 과학기술의 인재화를 실현하는 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과학기술의 강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1999년 도서관법(이하 구법)과 2012년 개정된 도서관법(이하 신법)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신법이 구법과 비교하여 수정, 삭제, 신설된 조문들은 무엇이고, 이로 인해 파악할 수 있는 도서관계의 변화와 특징은 무엇인지 신·구조문 대비표 방식을 통해 고찰해 보는 것이다. 분석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북한 도서관계의 현황과 관심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남북 도서관 간 교류협력과 논의의 초석을 다져보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북한의 도서관법과 관련된 연구에는 남한의 송승섭(2005), 김성욱(2010a; 2010b), 차금선(2017), 그리고 북한의 리숙영(2016a; 2016b) 등의 연구가 있다.

송승섭(2005)은 1999년에 수정된 북한의 도서관법을 조문별로 분석하고, 남한의 도서관법과 비교한 바 있다. 남한과 북한의 도서관법에서의 차이점은 남한에서는 관종별 도서관의 설립·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북한은 도서관 운영의 기본 요소인 자료수집과 관리, 이용봉사, 국가의 지원체계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김성욱(2010a; 2010b)은 남북한 도서관법의 차이점으로 이념적 지향성에 있어서의 근본적 차이를 들고 있다. 북한의 국가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접근 범위, 출판물 수집대상, 출판물 대출에 있어서의 제한조치,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방법을 남북한 도서관법의 주요 차이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차금선(2017)은 김책공업종합대학 도서관,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인민대학습당 전자도서관, 지방 전자도서관 등 주요 전자도서관 현황을 전하면서 그 법적 지위인 도서관법도 함께 논하고 있다. 북한도서관의 목적 및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헌법, 출판법, 행정처벌법의 내용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리숙영(2016a; 2016b)은 『도서관일군 참고자료』에서 2012년 수정보충(재개정)된 북한의 도서관법 제4장(장서의 보존관리)과 제5장(도서관봉사)의 영역을 각 조문별로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북한도서관의 운영방식을 실제로 알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글이다.

본 연구는 남한의 송승섭, 김성욱, 차금선의 연구에서 조사 분석된 구법(1999)의 조문들은 모두 제외하고 신법(2012)에서 수정, 삭제, 신설된 조문들만을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북한 리숙영의 연구를 포함한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여 북한도서관의 변화 양상과 특징들을 고찰해보았다는 측면에서 이전 연구들과는 차이점을 갖는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과거 및 현재의 북한도서관법, 북한의 도서관운영방법연구소가 발간한 『도서관 일군 참고자료』, 그리고 북한도서관법에 등장하는 용어 등이 분석되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신(2012)·구(1999) 도서관법의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북한도서관법의 구법(1999)과 신법(2012)을 신·구조문 대비표 방식으로 해당 조문들을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1999년 구법과 동일한 2012년 조문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수정, 삭제, 신설된 조문들만을 분석하여 그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북한법령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www.uni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음의 글에 의하면, 북한은 도서관법 외에 도서관법 시행세칙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법을 철저히 관철[준수]하기 위하여 작성된 도서관 시행세칙에는 법 조항별로 준수하여야 할 규정과 세칙들이 구체화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김정일]께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도서관 법과 시행세칙을 계속 수정 완성해 나가도록 하심으로써 도서관 사업은 법적으로 튼튼히 안받침 [뒷받침]되게 되었다”(정은심, 2017, 3). 그러나 아쉽게도 도서관법 시행세칙은 해당 문건 확보가 불가능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2. 『도서관일군 참고자료』의 관련 내용 분석

북한 도서관의 현황과 운영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가 CD-ROM 형태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6년 1~4호, 2017년 1~4호를 북한의 도서관법과 병행하여 살펴보았다. 『도서관일군 참고자료』는 평양시 평천구역의 도서관운영방법연구소에서 계간으로 1년에 4번 간행하고 있다. 국내에는 2016년도와 2017년도분만 존재한다. 도서관운영방법연구소는 1982년 창립되었고 “도서관사업에서 제기되는 리론[이론] 실천적 문제들과 전국의 도서관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정은심, 2017, 4).

3. 북한도서관법 등장 용어의 분석

북한의 도서관법에 등장하고, 남한의 연구자들에게는 생소한 도서관 관련 북한 용어들에 대하여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6년 1~4호, 2017년 1~4호, 표준대국어사전,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내

남북한 언어비교 사이트 등을 참고하였다. 국립국어원의 표준대국어사전은 북한어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고, 통일부의 북한정보포털 사이트에는 1,000여 개 이상의 북한말에 대응하는 남한말을 제공해주고 있다.

IV. 북한 신·구 도서관법 비교 분석

1. 북한 신·구 도서관법의 구성

1999년에 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은 총 5장 45조로 구성된 반면, 2012년에 개정된 북한도서관법은 제2장(도서관의 조직운영)이 신설되고, 일부 장의 용어가 변경되어 총 6장 58조로 개편되었다.

제1장(도서관법의 기본, 제1조~제8조)은 도서관법의 사명, 용어의 정의, 도서관의 조직운영, 출판물 수집, 장서보존관리, 도서관 봉사, 도서관분야의 교류와 협력 등 도서관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도서관의 조직운영, 제9조~제16조)은 2012년 신법에서 새롭게 신설된 장으로 도서관 조직운영의 기본, 도서관의 설립 및 등록, 도서관일군(직원), 전자도서관의 운영, 도서관운영의 개선 등 도서관 운영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제3장(출판물의 수집, 제17조~제24조)은 출판물 수집의 기본, 출판물 수집계획의 작성과 실행, 출판물의 수집 방법과 상호교환, 전자출판물의 수집, 목록자료기지(DB) 구축으로 되어 있다.

제4장(장서의 보존관리, 제25조~34조)은 출판물의 보존, 보관, 소독, 제적, 실사, 화재사고의 방지, 그리고 컴퓨터망 봉사시설의 출입 등 장서관리와 관련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도서관봉사, 제35조~제51조)은 도서관 이용 전반에 대한 편의보장, 개관일, 이용방법, 열람, 대출, 반납, 통신대출, 이동문고, 상호대차, 출판물의 소개, 과학기술의 보급, 원격강의, 결심채택(의사결정) 지원, 전자인증대리봉사, 봉사요금 등 각종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2조~제58조)은 도서관 사업의 지도, 도서관 부문의 과학연구사업, 도서관사업의 조건 보장, 감독통제, 손해배상, 이용중지, 이용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 등으로 도서관 사업 체계와 책임 관련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북한도서관법 등장 용어의 의미

- 결심채택지원: 의사결정 지원
- 과학기술자료통보: “새로운 과학기술정보들을 제때에 수집하고 분석 연구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수요자들에게 주동적으로 신속히 알려주는 사업”(백석, 2016, 11)

- 국가가격제정국: 국정 가격 등을 정해 북한 내 물가를 통제하여, 경제 흐름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김두환, 2011)
- 도서관일군: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전체를 말하여 “지위와 역할에 따라 사서와 그를 지도하는 일군”들을 지칭. 도서관일군의 자격은 “고등교육을 받은 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한 자”이다(북한도서관법 제12조). 북한은 사서 급수제와 별도로 공이 많은 사서에게 공훈사서나 인민사서라는 칭호를 부여하기도 한다. 공훈 사서는 인민대학습당과 같은 도서관에서 15년 이상 계속해서 업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민사서는 그 기간이 20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 칭호를 준다(KBS World, 2021)
- 봉사기실: 전산실의 서버(server) 룸(room)
- 실사: “현물과 장서 등록대장을 대조 확인”하는 일(리숙영, 2016a, 25). 남한의 장서점검
- 자료기지: 데이터베이스(database)
- 전자인증: “컴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에 가입한 자의 신분, 전자거래의 정확성 같은 것을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일(북한의 「전자인증법」 제2조)
- 제적: “도서관장서 가운데서 필요에 따라 책을 없애는 것”(『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6(2), 48)
- 컴퓨터망: “컴퓨터 호상간또는 컴퓨터와 통신선로, 말단장치, 컴퓨터망보안시설, 운영프로그램 같은 것”(북한의 「컴퓨터망관리법」 제2조)
- 컴퓨터망봉사기실: 컴퓨터망 + 봉사기실
- 호상대출: “자기 도서관에 없는 책을 요구하는 독자에게 다른 도서관의 책을 빌려다 보여주기 위하여 매개도서관이 서로서로 협력하는 것”(『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7(3), 8-9)

3. 북한도서관법의 주요 개정 내용

가. 제1장 도서관법의 기본(1조~8조)

제1장 도서관법의 기본은 도서관 본연의 조직운영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고, 서고관리를 장서의 보존 관리로, 도서관리용을 도서관봉사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또한, ‘도서관’과 ‘출판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여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였다. 구법과 비교하여 제1조가 수정되었고 제2조(정의)는 신설되었다.

제1조(도서관법의 사명)는 “인민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도서관의 핵심 기능으로 사회적학습의 거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재강국화, 전민 과학기술인재화 실현을 위해 북한의 도서관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과 과학기술지식의 습득을 위한 사회적학습의 거점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제2조(정의)에서는 도서관을 “출판물을 갖추어놓고 사람들이 공동으로 리용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사회 교육기관”으로, 출판물을 “도서관에서 취급하는 도서와 자료 같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2조는 전자도서관을 도서관에, 전자출판물을 출판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첨단과학기술과 디지털 경제에 기초한 경제체제를 내세우며 새로운 과학 기술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전 인민이 학습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확대하고 있다(정창현, 2020). 이와 같은 동향에 발맞추어 전자도서관과 전자출판물이 도서관법의 정의에 포함되고 있다.

제1장에서는 도서관법 주요 용어의 변경이 주된 특징이다. 제2조 정의를 신설하면서 도서관 및 출판물의 정의와 범위를 명시하여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의 이해도를 높였다(〈표 1〉 참조).

〈표 1〉 북한도서관법 제1장(도서관법의 기본) 신규대비표

개정 前(1999년)	개정 後(2012년)
<p>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은 출판물의 수집과 서고관리, 도서관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주는데 이바지 한다.</p>	<p>제1조(도서관법의 사명) [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은 <u>도서관의 조직운영, 출판물의 수집, 장서의 보존관리, 도서관봉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 주는데 이바지 한다.</u></p>
-	<p>제2조(정의) [신설] 1. 도서관이란 출판물을 갖추어놓고 사람들이 공동으로 리용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사회교육기관이다. 도서관에는 전자도서관도 속한다. 2. 출판물이란 도서관에서 취급하는 도서와 자료 같은 것을 말한다. 출판물에는 전자출판물도 속한다.</p>

나. 제2장 도서관의 조직운영(제9조~제16조)

제2장 도서관의 조직운영은 신법에서 신설된 장이며 특히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관련 조문이 강화되었다. 제2장에서는 도서관의 직원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법령 신설을 통해 사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특히 전자도서관의 운영과 디지털참모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9조(도서관조직운영의 기본요구)는 도서관이 “인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과학문화기술수준을 높여주는 인민학습의 중요거점”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제10조(도서관의 설립)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도서관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1조(도서관의 등록)는 “중앙도서관지도기관이 도서관을 유형과 소속에 따라 등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은 도서관은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도기관은 “당 혹은 사회단체, 사업기관”을 가리킨다(차금선, 2017, 13).

1999년 개정된 구법의 제6조 도서관일군에 관한 조문은 신법에서 제12조(도서관일군의 구분과 자격), 제13조(도서관전문가의 양성), 제14조(도서관일군에 대한 재교육) 세 개의 조문으로 확대되었다. 도서관일군의 양성과 재교육을 조문에 명시하여 직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12조(도서관일군의 구분과 자격)는 도서관일군에는 “그 지위와 역할에 따라 사서와 이들을 지도하는 일군”들이 있고, “고등교육을 받고 정해진 기준에 도달한 자”만이 도서관일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13조(도서관전문가의 양성)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서관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세울” 것을 언급하며 전문 도서관일군을 배양할 것을 강조한다.

제14조(도서관일군에 대한 재교육)에서는 “도서관일군은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서관일군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 체계를 세워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는 도서관일군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도서관 관련 이론과 실무교육을 받아서 전문 사서로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리애순(2016, 45)은 “나무는 10년 키우고 사람은 일생 키운다”는 격언과 함께 도서관일군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기본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높은 문화적 지식과 지식갱신 능력, 문헌의 선별 능력과 여러 과목에 대한 기초 이론 지식, 문헌을 가공하고 재창조하는 능력, 둘째, 컴퓨터의 핵심인 다매체기술, 망정보기술, 문자처리 조작 능력, 셋째, 일정한 외국어 읽기 능력과 일반적인 번역수준, 넷째, 소박하고 청렴결백, 헌신적인 복무 정신과 봉사 의식이다. 북한은 문헌개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공 기초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전공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제15조(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의 운영)는 전자도서관 관련 신설 조문으로 “컴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컴퓨터망 정보봉사, 컴퓨터망 보안”과 관련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컴퓨터망 정보봉사는 온라인 실시간 문답봉사, 전자우편봉사, 망상 열람, 정보의 내리적재(다운로드)봉사, 자동 자료기지 만들기, 검색봉사 등을 포함한다. 망상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봉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4명 이상의 직원이 교대로 봉사하며, 5건 이하의 원문다운로드는 무료로 서비스 한다(최영희, 2016, 42).

제16조(도서관운영의 개선)는 도서관이 “사회교육 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 운영을 규격화, 표준화하며”, “도서관 봉사환경을 개선”하고, “도서관의 정상운영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2장은 도서관의 설립 및 등록과 전자도서관 운영, 도서관일군의 전문 양성에 관한 조문으로 모두 신설된 8개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도서관의 문헌 수집, 보존, 봉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도서관 자체와 인력에 대해 강조하여 규범화한 것이 특징이다(〈표 2〉 참조).

〈표 2〉 북한도서관법 제2장(도서관의 조직운영) 신구대비표

개정 前(1999년)	개정 後(2012년)
-	제9조(도서관조직운영의 기본요구) [신설] 도서관은 인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과학문화기술수준을 높여주는 인민학습의 중요거점이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회교육의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도서관을 내오고 그 운영을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도서관의 설립) [신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지역의 문화발전수준, 장서보관능력, 도서관이용자수, 정보통신조건을 고려하여 도서관을 합리적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서관을 내오려 할 경우 도서관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前(1999년)	개정 後(2012년)
-	제11조(도서관의 등록) [신설] 중앙도서관지도기관은 도서관을 그 유형과 소속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도서관은 운영할 수 없다.
제6조 도서관일군은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보급자, 사회학습의 조직자이다. 국가는 도서관일군대렬을 특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제12조(도서관일군의 구분과 자격) [신설] 도서관일군에는 그 지위와 역할에 따라 사서와 그를 지도하는 일군이 속한다. 도서관일군은 고등교육을 받은 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한 자가 될 수 있다.
	제13조(도서관전문가의 양성) [신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서관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세우고 도서관 일군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제14조(도서관일군에 대한 재교육) [신설] 도서관일군은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서관일군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체계를 세우고 그들에 대한 재교육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	제15조(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의 운영) [신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을 갖추고 컴퓨터망을 통한 정보봉사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운영에서 컴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컴퓨터망정보봉사, 컴퓨터망보안과 관련한 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16조(도서관운영의 개선) [신설] 도서관은 사회교육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운영을 규격화, 표준화하며 도서관봉사환경을 개선하고 건물보수 및 개건, 설비관리사업을 짜고들어 도서관 정상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제3장 출판물의 수집(제17조~제24조)

제3장 출판물의 수집은 출판물의 수집체계와 전자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한다. 신법의 조문 대부분은 구법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책임기관이나 수집 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기관을 추가하였고, 자료 형태의 변화에 따라 인쇄출판물 외 축소필림, 록음물, 록화물 등에 대한 내용(제16조)은 삭제되고, 전자출판물에 대한 수집(제22조) 조문은 신설되었다.

남한은 출판된 책을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지만, 북한은 납본을 인민대학습당이 아닌 ‘국가서적관’이 따로 맡는다. 1948년 ‘국가서고’로 출범한 ‘국가서적관’은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 책 같은 모든 출판물을 수집해서 영구 보존하는 ‘보존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백창민, 2019).

제19조(출판물수집계획의 실행)는 도서관의 출판물 보급기관, 해당 기관과 연계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출판물보급기관은 도서관에 보장하게 된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배포”해야 하는 출판물보급기관의 의무를 갖는다.

제21조(출판물의 호상교환)는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국내 도서관 간 또는 해외 도서관과 출판물을 교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22조(전자출판물 수집)는 전자출판물의 수집을 “컴퓨터망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를 통하여 수집”하며, “다른 나라의 출판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23조(출판물의 등록)는 출판물의 내용, 성격, 형태 등에 따라 출판물등록대장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출판물의 재등록”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제24조(목록자료기지의 구축)는 신설된 조문으로 중앙도서관지도기관은 “도서관의 목록자료 기지구축에서 통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3장 출판물의 수집에서는 출판물 수집계획의 작성과 실행, 전자출판물을 포함한 출판물의 수집, 목록 DB의 구축, 그리고 납본, 구매(구입), 공유, 기증, 복사 등을 통한 출판물의 수집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북한도서관법 제3장(출판물의 수집) 신규대비표

개정 前(1999년)	개정 後(2012년)
제11조 도서관은 출판물보급기관과 주문예약을 바로 하고 도서, 신문, 잡지 같은 출판물을 제때에 수집하여야 한다. 중요하거나 가치있는 출판물은 먼저 수집하여야 한다.	제19조(출판물수집계획의 실행) [수정 및 신설] 도서관은 출판물보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과 관계를 강화하여 계획에 반영된 출판물을 제때에 수집하여야 한다. [수정] 출판물보급기관은 도서관에 보장하게 된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 출판물수집은 다른 나라와 호상교환을 통하여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출판물의 호상교환) [수정] 출판물수집은 우리나라 또는 다른나라 도서관들사이의 호상교환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6조 도서관은 열람, 대출자의 학습에 도움을 줄수 있는 축소필립과 특음물, 특화물 같은 자료도 수집하여야 한다. [삭제]	제22조(전자출판물의 수집) [신설] 전자출판물은 컴퓨터망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를 통하여 수집한다. 다른나라의 출판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할수 있다.
제14조 도서관은 수집한 출판물의 내용과 성격, 형태 같은 것에 따라 출판물등록대장을 만들고 수집한 출판물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출판물의 등록) [일부 신설] 도서관은 수집한 출판물을 내용과 성격, 형태 같은 것에 따라 출판물등록대장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출판물의 재등록은 상급기관의 승인밑에서만 할수 있다. [신설]
제15조 등록된 출판물은 정해진 분류표와 자모순 기호표에 의하여 분류한다. [삭제]	제24조(목록자료기지의 구축) [신설] 도서관은 장서에 대한 목록자료기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은 도서관의 목록자료기지구축에서 통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제4장 장서의 보존관리(제25조~제34조)

제4장 장서의 보존관리는 1999년 ‘서고관리’에서 2012년 ‘장서의 보존관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2년 신법에서는 출판물의 보존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여 출판물의 전승(傳乘)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면서 장서 보존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특히 전자출판물 및 컴퓨터와 관련된 설비·보안, 제적 출판물의 처리방법,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장서를 국가 지적재부로 표현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존과 폐기를 중점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제26조(출판물의 보존)는 신설된 조문이며 도서관은 “출판물 보존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우리 민족의 지적재부를 후손만대에 전해갈 수 있게” 출판물의 전승을 위한 보존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리숙영은 출판물의 보존을 위해 다음의 사안을 강조하고 있다. “도서관은 전자자료의 보존에 필요한 CD 쓰기장치와 소프트웨어들을 구비하고 2중 보관원칙에 따라 모든 전자자료들을 보존”하여야 하며, “2중 보관은 반드시 CD 매체에 하여야 한다. 보관용 매체들이 자기마당[자기장]

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30℃ 이하의 온도와 45%~55%의 상대습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봉사기실은 무인조종을 받아들여 최대한 무인상태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원격 감시카메라와 화재경보 장치들을 비롯한 필요한 설비들을 갖추고 조명을 보장”하여야 한다. “봉사기실 [서버룸]은 섭씨 15℃~30℃의 온도와 25%~60%의 상대습도를 보장”하여야 하며, “봉사기실에는 관리자 외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리숙영, 2016a, 21).

제27조(출판물의 보관)는 출판물의 종류, 형태, 내용, 성격에 따라 장서를 조직하고 실정에 맞게 배열(배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로작(勞作, 노동 계급의 혁명 이론 발전에 의의를 가지는 고전적 저서),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영상을 모신 출판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배려(기증)해준 출판물, 비공개도서와 자료, 영구보존을 위한 장서는 따로 조직하여야 한다. 인쇄출판물은 과학부문별, 어문별로 장서를 조직하여야 하며, 축소 필립, 카세트, 전자매체들은 인쇄출판물과 구분하여 장서를 조직하여야 한다. “장서 배열은 장서 조직에 따라 봉사와 관리에 편리하게 분류순, 자모순, 등록순, 년대순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서로 결합하여 배열할 수도 있다”(리숙영, 2016a, 22).

“도서관은 전자자료 기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컴퓨터망에 대한 불법침입과 컴퓨터 비루스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봉사기[서버]는 전자문헌 생산용과 보관용, 봉사용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다. 봉사기에 당의 사상과 노선에 어긋나는 자료들이 적재되지 못하도록 엄격한 자료 검열 대책”과 “비공개 전자자료에 대한 보안체계를 세워야 한다.” “도서관은 컴퓨터 비루스 검사 책임자를 정하고 매주 설비점검의 날을 리용하여 비루스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봉사기에 전자자료를 적재[업로드]할 때에는 전자자료의 보안상태와 비루스 감염상태를 반드시 검열”하여야 한다(리숙영, 2016a, 22).

제32조(출판물의 제적)는 출판물의 제적에 관한 조문이다. 이용 가치가 없는 발행된 지 오랜 도서, “종당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도서와 전자매체,” “재판된 도서에 대한 전판[前版]도서,” “잃어버린 도서와 전자자료,” “심히 파손되었거나 못쓰게 된 도서와 전자매체,” “해당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회수하거나 없애게 된 출판물,” “다른 출판물과 교환하였거나 다른 기관에 넘겨준 출판물,” “보관기한이 지난 신문과 잡지(자연과학 부문의 신문 잡지는 제외)” 등은 제적할 수 있다. “도서에 한해서 도[道]도서관은 종당 2부, 시, 군도서관은 종당 1부씩 종본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회수하거나 없애게 된 출판물들은 종본을 남기지 말고 지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리숙영, 2016a, 24).

제34조(서고, 컴퓨터망봉사기실의 출입)는 서고 및 전산실의 출입 질서에 관한 조문이다. 서고와 봉사기실 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있으며, 봉사기실에 출입하고자 하면 “사전에 ‘봉사기실 출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비준통지를 받은 다음 출입하고, “출입하는 대상에 대해 ‘봉사기실 출입대장’에 그 정형[情形, 상황, 사정의 형편]을 기입해야 한다”(리숙영, 2016a, 25). 컴퓨터망 봉사기실(전산

실의 서버 룸)의 보존과 보안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제4장 장서의 보존관리는 출판물의 전송과 이용을 위한 보관조건, 수복(고쳐서 본 모습과 같게 함), 제적, 실사, 점검, 컴퓨터망 봉사기실의 출입질서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자자료의 보존과 봉사기실에 대한 보안과 관련된 조문이 제시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북한도서관법 제4장(장서의 보존관리) 신규대비표

개정 前(1999년)	개정 後(2012년)
-	제26조(출판물의 보존) [신설] 도서관은 출판물보존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우리 민족의 지적재부를 후손만대에 전해갈수 있게 출판물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 출판물은 내용과 성격, 형태 같은 것에 따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서고에 보관한다. 축소필립과 특음물, 특화물 같은 자료는 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한다.	제27조(출판물의 보관) [수정 및 신설] 도서관은 출판물의 종류와 형태, 내용, 성격 같은 것에 따라 장서를 조직하고 실정에 맞게 배열하여야 한다. [수정] 전자출판물은 자료저장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적 요구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컴퓨터망에 대한 불법침입과 컴퓨터바이러스전파를 엄격히 막으며 전자출판물에 대한 2중 보관체계를 세워야 한다. [신설]
제23조 쓸모가 없는 출판물은 제적한다. 출판물의 제적은 해당 기관의 승인밑에 한다.	제32조(출판물의 제적) [수정 및 신설] 쓸모가 없는 출판물은 제적한다. 도서관은 출판물의 제적대상을 바로 정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때에 제적하여야 한다. [신설] 제적된 출판물은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정한데 따라 처리한다. [수정]
제24조 도서관은 서고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승인없이 서고에 출입할 수 없다.	제34조(서고, 컴퓨터망봉사기실의 출입) [수정] 도서관은 서고와 컴퓨터망봉사기실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승인없이 서고와 컴퓨터망봉사기실에 출입할 수 없다.

마. 제5장 도서관봉사(제35조~51조)

제5장 도서관봉사는 1999년 ‘도서관리용’에서 2012년 ‘도서관봉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새롭게 신설된 제47조~제50조 외 다른 조문은 일부 문구 수정 정도로 구법과 거의 유사하다.

제47조(원격강의)는 새롭게 신설된 조문으로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원격 교육을 강조한다. “원격강의는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고 자료기지로 보관하였다가 수요에 따라 봉사”할 수도 있다. “원격강의 신청과 접수는 컴퓨터망을 통하여 진행한다. 강의는 어떤 주제 분야에 대하여 보통 한 강의로 진행하며 집중 강습은 일정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진행”한다. 북한의 도서관은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대학습당, 과학기술전당,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원격 강의를 진행하는 단위들과 협의 밑에 원격강의를 조직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리숙영, 2016b, 11). 한편, 북한은 2020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원격교육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을 제정한 바 있다(국립통일교육원, 2021, 231).

제48조(번역, 결심채택지원, 과학기술현장봉사, 과학기술토론회)는 신설된 조문이다. 북한의 도서관은 타국의 문헌정보를 번역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번역은 도서관의 준비된 일군 또는

전문부서에서도 하고 다른 나라 말을 이는 다른 기관 사람들에게 위탁”해서 할 수도 있다. “문헌 정보를 위탁 번역하였을 때에는 정한데 따라 해당한 값[비용]을 줄[지불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독자에게 번역자료를 복사해주는 경우에는 독자가 정해진 요금을 내야”하며, 요금은 “국가가격제 정국과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리숙영, 2016b, 11). 북한의 도서관은 과학기술 일군들과 지도 일군들의 결심채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정보조사 활동을 제공하며, 현장 정보봉사도 제공하는데 이는 “도서관일군들이 문헌정보 자료들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 직접 진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리숙영, 2016b, 12).

제49조(전자인증대리봉사)는 전자인증 봉사에 대한 신설 조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인증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인증이란 “컴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에 가입자의 신분, 전자거래의 정확성 같은 것을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위임받은 일부 도서관은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전자인증 봉사를 대리할 수 있다. 전자인증은 ‘국가컴퓨터망가입자인증의뢰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강진규, 2017).

제50조(봉사로료금)는 도서관 대출봉사에 따라 봉사로료금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컴퓨터 망을 통하여 개별도서관이 구축한 자료, 즉 자체로 구축한 각종 자료기지, 자체로 번역 출판한 출판물, 자체로 작성한 정보조사연구자료 등의 정보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유료로 봉사하며, 자료를 내리적재(다운로드)할 때는 자료량(바이트 수)에 따라 요금을 받는다(리숙영, 2016, 12).

제5장 도서관봉사에서서는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열람, 대출, 반납, 독후활동, 홍보, 이용자의 학습, 번역, 과학기술관련 각종 서비스, 망 활용을 위한 전자인증 대리봉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봉사로료금, 건물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표 5〉 참조).

〈표 5〉 북한도서관법 제5장(도서관봉사) 신규대비표

개정 前(1999년)	개정 後(2012년)
-	제47조(원격강의) [신설] 도서관은 영상 및 음성전송을 쌍방향으로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인 원격강의실을 갖추고 도서관리용자에게 원격강의를 할수 있다.
-	제48조(번역, 결심채택지원, 과학기술현장봉사, 과학기술토론회) [신설] 도서관은 다른 나라 출판물에 대한 번역봉사,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결심채택지원봉사, 과학기술현장봉사, 과학기술토론회 같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	제49조(전자인증대리봉사) [신설] 해당 도서관은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할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에 대한 전자인증봉사를 대리할수 있다. 전자인증봉사를 위임받은 도서관은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전자인증봉사를 하여야 한다.
-	제50조(봉사로료금) [신설] 도서관은 도서관리용자의 신청에 따라 출판물의 대출봉사를 진행하고 정해진 봉사로료금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문, 과학연구부문의 도서관에서는 출판물의 대출봉사로료금을 받지 않는다. 봉사로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바. 제6장 도서관사업에 따른 지도통제(제52조~제58조)

신법(2012) 제6장 도서관사업에 따른 지도통제는 구법(1999) 제5장에 해당되며 도서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감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54조(도서관부문의 과학연구사업)는 “해당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도서관운영을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 있게 양성”해야한다는 구법 조문은 신법 제2장 제13조에 명시되면서 삭제되었다.

제55조(도서관사업조건보장)는 도서관부문에 필요한 노력, 설비, 비품, 자금을 원만히 보장해주는 기관으로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체신기관, 재정은행기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법에는 없었던 전력공급기관, 체신기관이 신법 조문에 추가되었다. 북한의 도서관에서는 전기공급 문제가 아직도 중요한 해결 문제이고, 국민의 요구에 따른 통신 대출 서비스(법 제40조)도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6장은 국가의 도서관사업 운영 체계와 조건을 명시하며, 위법 시 손해보상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무는 법적 제재를 강조한다. 구법의 도서관 일군에 관한 조문의 일부가 삭제되었고, 도서관 업무의 진행과 관련된 기관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표 6〉 참조).

〈표 6〉 북한도서관법 제6장(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신규대비표

개정 前(1999년)	개정 後(2012년)
제41조 해당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도서관운영을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며 도서관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 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제54조(도서관부문의 과학연구사업) [일부 삭제] 해당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도서관운영을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2조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도서관 부문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비품, 자재, 자금을 <u>제때에</u> 보장하여야 한다.	제55조(도서관사업조건보장) [수정]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u>전력공급기관, 체신기관</u> ,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도서관부문에 필요한 노력, <u>전력, 설비, 비품, 자재, 자금을 원만히</u> 보장하여야 한다.

신법(2012)의 주요 특징을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도서관법의 기본은 도서관 기능과 관련된 용어를 변경하고, 도서관과 출판물을 정의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제2장 도서관의 조직운영은 신설된 장으로 도서관의 설립과 등록, 전자도서관의 운영, 도서관일군의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조문화하였다.

제3장 출판물의 수집은 출판물의 수집체계와 등록, 자료조직과 관련된 조문으로 대부분의 조문은 구법의 내용과 유사하다. 정보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축소필름, 녹음물 등의 조문은 삭제되고, 전자출판물의 수집 관련 조문이 신설되었다.

제4장 장서의 보존관리는 출판물의 전승(傳承)에 대한 의미를 강화하고, 전자출판물과 관련된 설비 및 보안, 제적 출판물의 처리방법, 보존과 폐기와 관련된 조문을 신설 또는 수정하였다.

제5장 도서관봉사는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조문으로 북한 도서관의 가장 큰 기능인 학습과 관련한 원격강의, 결심채택(의사결정) 지원, 과학기술 현장봉사, 과학기술토론회 등의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 망 환경에서의 전자인증 대리봉사, 봉사료금의 부과 등의 조문을 신설하였다.

제6장 도서관사업에 따른 지도통제는 도서관사업의 운영 체계와 조건, 법적 제재를 명시하였다. 도서관 업무의 보장을 위한 관련기관으로 전력공급기관, 체신기관 등의 기관이 추가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북한의 도서관법은 1998년 처음 제정되었고 1년이 지난 1999년에 개정되었으며, 2012년에 재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도서관은 사회적학습의 거점이고, 사회적학습의 조직자 역할을 한다. 북한도서관법 제3조는 도서관이 사회적학습의 조직자임을 강조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도서관봉사를 잘하는 것은 “사회적학습의 기풍”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제35조에서는 도서관봉사가 “도서관 리용자의 학습조건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천명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도서관은全民 과학기술 인재화, 인재 강국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도서관법 제9조는 도서관이 人民들의 사상의식 수준과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주는 人民학습의 중요 거점임을 명시하고 있다. 全民 과학기술의 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成員들을 최신 과학지식과 기술기능에 精通하고 이를 능숙하게 활용하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萬만히 풀어나갈 수 있는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인 것이다. 북한도서관의 목적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과학기술의 인재로 키워 근로자들의 完全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도서관은 과학기술 보급기지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도서관법 제3조는 도서관이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보급자임을 밝히고 있고, 제46조는 과학기술자료통보, 새기술통보교육, 과학리론강의, 과학강연 등의 과학기술보급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지역의 거점 도서관을 통해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도서관법 제47조는 도서관이 현대적인 원격강의실을 갖추고 도서관 이용자에게 원격강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많은 도서관은 과학기술 통보강의와 외국어 강습 등을 원격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도서관은 과학기술현장봉사, 문답봉사, 과제봉사, 자문봉사 등 다양한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제48조에서는 “번역봉사,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결심채택 지원봉사, 과학기술현장봉사, 과학기술토론회 같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문답봉사는 “리용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조사해 주며 리용자의 물음에 해답을 주는 봉사”(리숙영, 2016b, 10)를 말하고, 과제봉사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발전방향과 연구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해결을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현실도입을 방조[협조]해주며, 그 수행 결과를 평가해주고 고무해주는 사업”을 의미한다(김명옥, 2016, 33).

여섯째, 북한의 도서관은 도서관일군(직원)의 양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법 제12조에서는 도서관일군의 범위와 대상, 제13조에서는 도서관전문가의 양성을, 제14조에서는 도서관일군에 대한 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도서관일군의 전문성 강화는 도서관의 기능을 증대하여全民 과학 기술 인재화를 위한 봉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수자(디지털) 참고자문 봉사를 수행하는 일군이 갖춰야 할 자질은 “정보학을 비롯한 기초지식, 도서관 규정과 업무, 각종 검색도구 사용방법에 정통하고, 2차, 3차 문헌 작성, 학과 범주의 자문 문제에 대한 리해능력” 등이다(태수미, 2017, 45).

일곱째, 북한의 도서관 역시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들과 도서관 분야의 교류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도서관법 제8조(도서관분야의 교류와 협조)에서는 국가가 도서관 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 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와 조선도서관 협회가 협력체를 구성하여 교류협력에 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012년 북한도서관법의 분석이 제시하는 남북도서관 간 교류협력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도서관은 다양한 과학기술 정보서비스의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의 도서관법은 현대적인 전자도서관, 전자도서실을 갖추고 컴퓨터망을 통한 정보봉사활동을 적극 벌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현재 제공하는 과학기술현장서비스(임베디드 서비스), 문답 봉사(참고정보서비스), 수자자문봉사(디지털 참고서비스, 협력 디지털 참고서비스), 새 책 소개(북큐레이션), 개성화정보봉사(이용자 중심의 능동적 정보서비스), 과제봉사(과제 발굴 및 분석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향후 정보서비스 분야의 도서관 사서 또는 문헌정보학자 간 토론이 가능하다.

둘째, 북한도서관은全民 과학기술 인재화를 목표로 사회적 학습을 강조하며, 지역의 거점 도서관을 통해 원격교육을 조직 및 실시하고 있다. 원격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국내 교육용 콘텐츠의 확인과 동영상 포함 각 분야별 콘텐츠의 조사 발굴을 통해 교류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과거 EBS에서 1997년 제작한 ‘시베리아, 잃어버린 야생동물을 찾아서’가 ‘러시아 원동지방에 사는 조선범’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된 바 있다(조현성 외, 2021, 299). EBS의 수학교육, 과학교육 콘텐츠의 활용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은 문헌정보학적 지식을 갖추고, 컴퓨터 관련 기술, 외국어 능력, 제2, 제3의 전공 지식을 겸비한 도서관 일군들의 재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도서관은 북한에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운영지원 플랫폼 관리 노하우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공간 변화(공간

구성, 시설 및 기기, 관리 및 활용, 공간별 프로그램 등)에 따른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남북 사서의 정보서비스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도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북한 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남한 내 북한도서관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북한도서관의 현실과 북한도서관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정통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남북한 도서관 간 교류협력을 준비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남한의 도서관법 제19조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에 따라 전국 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단기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도서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도서관관련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진규 (2017. 7. 29.). 북한 태블릿에 등장한 전자서명 인증서. 강진규의 디지털허리케인, 출처:
<http://www.dihur.co.kr/1461>
- 국립통일교육원 (2021). 북한 이해. 서울: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 김두환 (2011. 1. 13.). 北, ‘국가가격제정국’을 ‘위원회’로 개편. 연합뉴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print/001/0004866859>
- 김명옥 (2016). 정보봉사방식의 하나인 과제봉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연구.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6(2), 33-35.
- 김성옥 (2010a). 북한의 도서관법에 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34, 133-154.
- 김성옥 (2010b). 북한의 도서관 법제에 관한 연구. 2010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I). 법제처, 37-78.
- 김종선 이춘근 (2017). 경제 재건을 위한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화 정책과 협력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출처: <https://www.stepi.re.kr/site/stepiko/report/View.do?cateCont=A0502&reIdx=126>
- 리숙영 (2016a).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 해설(4).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6(2), 21-25.
- 리숙영 (2016b).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 해설(5).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6(3), 7-12.
- 리숙영 (2016c).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시하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6(1), 13-14.
- 리아순 (2016). 정보의 망화배경하의 도서관의 인재자원건설.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6(1), 45-46.
- 백석 (2016). 과학기술통보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도서관의 중요한 임무.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6(4), 11-13.

- 백창민 (2019. 11. 8.). 한반도에서 가장 큰 도서관, 북한에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출처:
<http://omn.kr/1lgxe>
- 송승섭 (2005). 남북한 도서관법의 비교 연구. 도서관, 60(2), 25-61.
- 안진송 (2017).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7(1), 12-14.
- 정은심 (2017). 도서관사업의 과학화를 위하여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7(4), 2-5.
- 정창현 (2020. 9. 18.).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키워드 ④ 전자도서관 - 전자도서관, 과학기술정보
보급의 거점 역할. 원불교신문, 출처:
<http://www.w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70>
- 조현성, 전영선, 최재황, 이성우, 김소연, 정원희 (2021).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차금선 (2017). 북한의 IT산업과 전자도서관 현황.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년도 하계학술대회논문
집. 한국지방정부학회, 1-20.
- 최영희 (2016). 전자도서관 참고문답봉사체계 《도서관전문가연합행체계》에 대하여. 도서관
일군 참고자료, 2016(3), 41-42.
- 태수미 (2016). 수자참고자문봉사에서 봉사일군이 갖추어야할 자질. 도서관일군 참고자료, 2016(2),
45-46.
- KBS World (2021. 4. 1). 북한의 도서관.
출처: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board_seq=401104

[홈페이지]

북한정보포털. 출처: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skNkLangCompare.do>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출처: <http://www.unilaw.go.kr/main.html>

표준국어대사전. 출처: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n, Jinsong (2017). Further enhancing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library is an important requirement for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t civilization power. Reference Materials for Librarians, 2017(1), 12-14.

- Back, Changmin (2019, November 8.). The largest library on the Korean peninsula is in North Korea. OhmyNews, Available: <http://omn.kr/1lgxe>
- Back, Seok (2016). It is an important task of libraries to strengthen science and technology notification projects. Reference Materials for Librarians, 2016(4), 11-13.
- Cha, Keumsun (2017). North Korea's IT industry and e-library status. A collection of papers for the 2017 Summer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1-20.
- Choi, Younghee (2016). E-library reference service system about «Library professional joint navigation system». Reference Materials for Librarians, 2016(3), 41-42.
- Database on a Unified Korea's Legal System. Available: <http://www.unilaw.go.kr/main.html>
- Jo, Hyeon-Seong, Jeon, Youngsun, Choi, Jae-Hwang, Lee, Sungwoo, Kim, Soyeon, & Jung, Wonhee (2021). A study on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library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Presidential committee on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of Korea.
- Jung, Changhyun (2020, September 18). Keywords to understand North Korean society ④ electronic libraries - the role of a hub for the dissemination of electronic libraries and science and information. WonbulkyoNews, Available: <http://www.w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70>
- Jung, Eunsim (2017). The immortal achievement of comrade Kim Jong-il, the Great Leader who dedicated himself to the systematization of science of the library business. Reference Materials for Librarians, 2017(4), 2-5.
- Kang, Jin Kyu (2017, July 29).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e that appeared on North Korean tablets. Kang Jin-kyu's Digital Hurricane, Available: <http://www.dihur.co.kr/1461>
- KBS World (2021, April 1). North Korea's library. Available: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board_seq=401104
- Kim, Doohwan (2011, January 13) North Korea revises 'national pricing authority' into 'committees'. Yonhap News Agency, Available: <https://n.news.naver.com/article/print/001/0004866859>
- Kim, Jongsun & Lee, Chun-geun (2017).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zation policy and cooperation plan for economic reconstructi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Available: <https://www.stepi.re.kr/site/stepiko/report/View.do?cateCont=A0502&reIdx=126>

- Kim, Myungok (2016). A study on the methodology to realize the task service, which is one of the methods of information service. *Reference Materials for Librarians*, 2016(2), 33-35.
- Kim, Sungwook (2010a). A consideration of North Korea's library law. *Law thesis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Institute*, 34, 133-154.
- Kim, Sungwook (2010b). A study on the library legislation in North Korea. 2010 Inter-Korean Legal Research Report(I). *Legislation Department*, 37-78.
- Korea Standard Dictionary. Available: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Lee, Aesoon (2016). Human resource construction in the library under the background of the information network. *Reference Materials for Librarians*, 2016(1), 45-46.
- Lee, Sookyong (2016a). Explanation of the revised and supplemented library ac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4). *Reference Materials for Librarians*, 2016(2), 21-25.
- Lee, Sookyong (2016b). Explanation of the revised and supplemented library ac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5). *Reference Materials for Librarians*, 2016(3), 7-12.
- Lee, Sookyong (2016c). Justification of the idea of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alent of the entire people presented by dear comrade Kim Jongeun. *Reference Materials for Librarians*, 2016(1), 13-14.
- National Institute of Unification Education (2021). *Understanding North Korea*. Seoul: Ministry of Unification, National Institute of Unification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
- North Korea Information Portal. Available: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skNkLangCompare.do>
- Song, Seung-Seop (2005). A comparative study of library law in South and North Korea. *Doseogwan*, 60(2), 25-61.
- Tae, Soomi (2016). Qualities of librarians in digital reference service. *Reference Materials for Librarians*, 2016(2), 45-46.